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52
----------	-------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자 : 최수진 · 안철수 · 김 건
박충권 · 신성범 · 김선교
이인선 · 강선영 · 김민전
박준태 · 곽규택 · 이상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신진연구자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기초연구 기반이 약화되는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문제는 연구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부재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함.

그러나 현행법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이나 신진연구자 육성에 관한 명확한 정책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이 단기적인 재정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의 책무로서 과학기술 인재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과

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3조의2 신설 등).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는 과학기술인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제9호 중 “활용”을 “전주기적(全週期的) 지원·활용”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학기술인력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수립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신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 정부는 신진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를 발굴·육성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는 과학기술인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 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u>활용 증진</u> 10. ~ 16. (생략) ④ ~ ⑧ (생략)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 <u>전주기적(全週期的) 지원·활용</u> ----- 10. ~ 16.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 ----- ----- -----

· 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② · ③ (생 략) <u><신 설></u>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과학기술인력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수립</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23조의2(신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 정부는 신진연구자(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를 발굴·육성 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u>
---	--